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56
----------	-----------

제안연월일 : 2023년 6월 19일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 문구를 법령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을 위해 수정함.

2. 주요내용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해 한국 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안 제5조제1항제3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p> <p>1.·2. (생략) <신설></p> <p>3.·4. (생략)</p>	<p>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장애인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수화, 점자 및 장애인 보조기기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p> <p>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p>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 수립) ① ----- ----- ----- -----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u>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u></p> <p>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p>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한국수어, 점자, 의사소통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이해하기 쉬운 자료 제공 등 장애인의 선택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교육 등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